

서울특별시 송파구 만화·웹툰 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만화·웹툰 콘텐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화”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만화진흥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웹툰”이란 만화진흥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만화·웹툰 콘텐츠산업”이란 「콘텐츠산업 진흥법」(이하 “콘텐츠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 중 만화·웹툰 및 만화·웹툰상품(만화·웹툰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의 창작·제작·배급·유통·활용·개발·판매·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분야의 만화·웹툰이 창작·유통·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만화·웹툰 창작자 및 제작자 등의 창의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콘텐츠산업법 제3조의2에 따른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만화

· 웹툰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만화·웹툰 콘텐츠산업 진흥의 목표
2. 만화·웹툰 콘텐츠산업 기반 조성 및 관련 기업 유치
3. 만화·웹툰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자원 조달방안
4. 만화·웹툰 콘텐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만화·웹툰 콘텐츠산업 창작공간·공유공간 등 기반시설 확충
6. 만화·웹툰 콘텐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육성
7. 만화·웹툰 콘텐츠 관련 창작·제작 및 창업 지원
8. 지역 문화예술과 만화·웹툰 콘텐츠의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9. 그 밖에 만화·웹툰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구청장은 만화·웹툰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만화·웹툰 콘텐츠 창작·제작 활성화 및 창업 지원
2. 만화·웹툰 콘텐츠 관련 기업 유치 및 거점 조성 지원
3. 만화·웹툰 콘텐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
4. 만화·웹툰 콘텐츠 공모전, 전시회, 체험 프로그램 등 관련 행사 개최

5. 만화·웹툰 콘텐츠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지원
6. 만화·웹툰 융복합 콘텐츠산업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만화·웹툰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만화·웹툰 콘텐츠 관련 창작자,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창작자 및 예비창작자의 창작활동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공유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만화·웹툰 콘텐츠산업 진흥 및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거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에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해당 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만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8., 2023. 3. 21.>

1. “만화”란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를 포함한다)에 그려진 것을 말한다.
2. “한국만화”란 대한민국 국민이 창작하고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만화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만화 및 제13조에 따라 한국만화로 인정받은 만화를 말한다.
3. “공동제작만화”란 대한민국 국민인 만화가 또는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만화사업자와 외국인 또는 국외에 주된 사업소를 둔 만화사업자가 공동으로 창작 또는 제작한 만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창작 또는 제작한 것으로 인정되는 만화를 말한다.
4. “출판만화”란 출판물의 형태로 발간되는 만화를 말한다.
5. “디지털만화”란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만화를 말한다.
- 5의2. “웹툰”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를 말한다.
6. “만화산업”이란 만화 및 만화상품(만화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 이

하 같다)의 창작·제작·배급·대여·판매·활용·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7. “만화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만화를 기획·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만화가 및 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교육훈련수당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1.>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제5조의2(지역균형발전과 만화산업의 기반시설 조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21.]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만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7. 9., 2022. 2. 17.>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중 만화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만화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만화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6. 그 밖에 만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실적 및 양성 계획
2. 교육과정(현장실습을 포함한다)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 등 교수진에 관한 사항
4.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5.>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3. 현장실습 비용
4. 그 밖에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필요경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약칭: 콘텐츠산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3. “콘텐츠제작”이란 창작·기획·개발·생산 등을 통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콘텐츠제작자”란 콘텐츠의 제작에 있어 그 과정의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이 자로부터 적법하게 그 지위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콘텐츠사업자”란 콘텐츠의 제작·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자”란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7. “기술적보호조치”란 콘텐츠제작자의 이익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콘텐츠에 적용하는 기술 또는 장치를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저작물”은 “콘텐츠”로 본다.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

립·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